

대한력비협회 가입·탈퇴규정

제정

2026. 01.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력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5조, 제5조의 2에 따라 시도협회(해외지부 포함)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가입, 탈퇴 등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은 협회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협회의 회원단체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는 회원단체가 회원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3. “제명”은 협회가 회원단체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4. “강등”은 정회원단체가 준회원단체로 등급이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5. “승격”은 준회원단체가 정회원단체로 등급이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6. “준회원단체”는 제4조에 따라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단체를 말한다.
7. “정회원단체”는 협회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총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회원단체를 말한다.

제3조(가입) ①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이 가입 및 탈퇴를 할 수 있다.

1. 시도 회원단체
 2. 전국규모연맹체
 3. 재외한인력비협회
- ② 단체 가입 요건을 확인을 위하여 협회 요청 시 단체의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가입 심의절차 등) ①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3.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4. 단체의 정관 및 모든 규정
5.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6.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7. 선수 및 동호인, 팀(스포츠클럽 포함) 등록 현황
8. 시·도종목단체 및 산하연맹체 설치 현황
9. 시·군·구종목단체 설치 현황
10.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11. 전년도 예·결산서 및 해당년도 예산서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매 회계연도 1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다음해 3월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③ 가입·등급은 가입 요건, 협회의 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가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5조(등급심의) ① 협회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의 등급에 관한 사항을 매년 심의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가입한 단체는 예외로 한다.

② 협회는 시도협회의 등급 심의를 위해 단체와 회원 시도체육회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단체 요구: 회원 시·도체육회에 가입한 시·도협회 가입 현황, 대회 개최 현황

2. 기타 체육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요건

제6조(승격) ① 준회원단체는 해당 등급 승인일부터 만 3년이 경과하면 승격 심의

대상이 된다.

② 단체가 준회원단체에서 정회원단체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가입 요건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준회원단체가 정회원단체로 승격할 경우: 시군구 회원단체 또는 협회에 등록된 단체, 팀, 클럽의 수가 2개 이상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시도로 가입한 선수의 수가 15인 이상일 것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승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전 평가 결과가 최저등급인 경우

2. 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협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한 경우

3. 관리단체 해제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승격 희망 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격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임원 명단

3. 단체의 정관

4. 시도별 선수 및 동호인, 팀(스포츠클럽 포함) 등록 현황

5. 회원 시·도체육회에 가입한 시·도종목단체 현황

6. 전국 대회 개최 및 국제 대회 입상 실적

7. 시·도협회가 주최하는 대회 현황(연 1회 이상)

⑤ 가입·등급심의위원회는 승격요건, 협회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승격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준회원단체로의 승격: 이사회의 의결

2. 정회원단체로의 승격: 총회 의결

제7조(강등 및 제명)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단체에 대해서는 강등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1. 회원의 가입요건 또는 승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2. 권리와 의무를 위반하여 협회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임원 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회원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4. 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스포츠비리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협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한 경우

5. 외부 감사와 협회의 감사의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가입·등급심의위원회는 강등 또는 제명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강등 또는 제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1.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

2. 강등 또는 제명 시 문제점

3. 개선 가능성

4. 제1항제5호에 따른 처분 조치 이행 가능여부

제8조(탈퇴) ① 단체가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탈퇴한다.

② 회원단체가 해산한 경우 협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가입 · 등급심의위원회) ① 협회는 가입, 승격, 강등, 제명 등의 심의를 위하여 가입·등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회원단체 가입에 관한 사항
2.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승격, 강등 및 제명에 관한 사항
3. 기타 체육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 및 해당 분야와 관련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회장이 위촉하되, 협회 직원을 간사로 한다.
2. 위원장 포함 위원 5명 이상 7명으로 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부 칙(2026. 01. 23.)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일	대한럭비협회 가입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대표자)	① 단체명		② 연락처
	③ 주소		
	④ 성명(한자)		⑤ 생년월일
	⑥ 현 주소		
⑦ 설립 연월일			
⑧ 설립목적			
⑨ 회원 및 지회 현황	회원수		지회수
⑩ 아시아/국제연맹과의 관계	명칭		회원가입 여부

대한럭비협회 정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한럭비협회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대한럭비협회장 귀하

붙임서류

- | | |
|---------------------------------|---|
| 1.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 8. 산하연맹체 가입 현황 |
| 2.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 9.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 |
| 3. 단체의 정관 및 모든 규정 | 10.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
| 4.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 11. 전년도 예산결산서 및 해당연도 예산서 |
| 5.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 12. 해당 단체의 국제경기연맹(IF) 및 아시아경기연맹(AF)
가입 관련 서류 |
| 6. 선수 및 동호인 팀(스포츠클럽 포함) 등록 현황 | 13. 기타 자료 |
| 7. 사도종목단체 및 사군구종목단체 가입 현황 | |

[별지 제2호서식]

접수일	대한력비협회 승격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대표자)	①단체명		②연락처
	③주소		
④설립일			
⑤ 승격 필요성 (500자 내)			
⑥ 승격요건	구분	검토 결과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시·도종목단체가 시·도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수 (시도종목단체 등급 구분)	개 시도 (정회원: , 준회원 , 인정단체)	
	아시아/국제연맹과의 관계	명칭: 가입여부:	
	현 등급 승인 후 3년 경과	등 급: 승인일:	
	가입한 아시아 및 국제연맹 명칭	아시아: 국제:	
	회원종목단체규정 제47조의3에 따른 직전 평가 등급		
위와 같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승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대한력비협회장 귀하			
붙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 명단 2. 단체의 정관 3. 시도별 선수 및 동호인, 팀(스포츠클럽 포함) 등록 현황 4. 회원시 · 도체육회에 가입한 시·도종목단체 현황 5. 전국 대회 개최 및 국제 대회 입상 실적 6. 시·도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 현황(연 1회 이상) 			